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4-121
----------	--------

제출년월일: 2024. 9. .

제 출 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민선8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부서 신설 및 명칭 변경 등 개편(안 제3조~11조)

- 국 신설: 교육체육국, 환경녹지국(안 제3조)
- 행정지원국(안 제4조)
 - 소관 국 변경: (교육정책과) 행정지원국 → 교육체육국
- 복지동행국(안 제5조)
 - 신 설: 실뿌리복지과
 - 명칭변경: 장애인사회보장과 → 장애인복지과, 가족행복지원과 → 가족정책과
 - 소관 국 변경: (아동보육과) 복지동행국 → 교육체육국
- 교육체육국(안 제6조)
 - 신 설: 평생학습과
 - 명칭변경: 교육정책과 → 교육청소년과, 아동보육과 → 보육정책과
 - 소관 국 변경: (체육진흥과) 관광경제국 → 교육체육국

○ 관광경제국(안 제7조)

- 소관 국 변경: (체육진흥과) 관광경제국 → 교육체육국

○ 환경녹지국(안 제9조)

- 소관 국 변경: (깨끗한마포과, 자원순환과, 맑은환경과, 공원녹지과)
도시환경국 → 환경녹지국

○ 도시관리국(안 제10조)

- 국 명칭 변경: 도시환경국 → 도시관리국
- 소관 국 변경: (부동산정보과) 교통건설국 → 도시관리국

○ 교통건설국(안 제11조)

- 소관 국 변경: (부동산정보과) 교통건설국 → 도시관리국

3. 주요 토의과제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2024. 9. 12.~2024. 9. 18.(제출된 의견 없음)

2)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해당없음

3) 새마포담당관의 행정규제심사 검토 결과: 해당없음

4) 가족행복지원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없음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복지동행국”을 “복지동행국, 교육체육국”으로, “도시환경국”을 “환경녹지국, 도시관리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조정·심사분석·의회협력·공약 사업 관리·구민소통·법제심사”를 “기획·조정·평가, 의회협력, 공약 사업 관리, 구민소통, 법제심사”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행정지원과·자치행정과·홍보미디어과·구민안전과·교육정책과·민원여권과”를 “행정지원과·자치행정과·홍보미디어과·구민안전과·민원여권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민방위, 전시운영계획”을 “중대재해 예방, 민방위·전시운영계획”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1항 중 “복지정책과·장애인사회보장과·어르신동행과·가족행복지원과·아동보육과”를 “복지정책과·실뿌리복지과·어르신동행과·장애인복지과·가족정책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관리, 지역보호체계, 지역복지육구조사”를 “관리”로, “지원”을 “지원, 주거복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실뿌리복지 시책 추진, 고독사 예방 및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기초생활보장사업, 복지대상자 조사·관리 및 보장 결정, 의료급여 및 자활 지원, 차상위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3. 노인복지시책 추진, 노인복지시설 관리, 노인 소득·일자리·돌봄에 관

한 사항

4. 장애인복지 시책 추진, 장애인복지시설 관리, 장애인 소득·일자리·돌봄, 장애인 편의 및 자립에 관한 사항

5. 가족복지·양성평등·아동복지 시책 추진, 아동복지시설 관리, 아동보호, 다문화가족·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8조를 삭제하며, 기존의 제6조와 제7조를 각각 제7조와 제8조로 한다.

제6조(교육체육국) ① 교육체육국에 교육청소년과·평생학습과·보육정책과·체육진흥과를 둔다.

② 교육체육국장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사업 추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마포구 미래교육지구 운영, 교육 시설 관리,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 도서관 설립 및 운영 감독, 독서진흥 및 도서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3. 영유아보육 시책 추진 및 보육시설 설치·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4. 생활체육 진흥, 생활체육시설 설치·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기존의 제9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로 한다.

제9조(환경녹지국) ① 환경녹지국에 깨끗한마포과·자원순환과·맑은환경과·공원녹지과를 둔다.

② 환경녹지국장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쓰레기 종량제, 생활폐기물, 환경공무원 복무 관리, 생활폐기물수집운반

- 업자 지도·감독, 청소차량 및 장비 관리,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 2. 자원활용정책 수립, 자원재활용,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에 관한 사항
- 3. 환경보전, 대기오염·수질오염·토양오염 방지, 환경개선부담금, 환경공해 방지, 에너지 관리에 관한 사항
- 4. 공원·녹지 관리 총괄, 산림 보호, 조수 보호, 도시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 공원녹지대 조성 및 유지·관리, 개발제한구역 관리 총괄에 관한 사항

제10조(도시관리국) ① 도시관리국에 주택상생과·도시계획과·건축지원과·부동산정보과를 둔다.

② 도시관리국장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주택행정, 주택통계, 주택재개발 사업, 재건축 및 지역조합주택, 주거환경개선 사업,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공동주택관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2. 도시관리 계획, 도시개발, 도심재개발, 지구단위 사업, 축진지구 사업에 관한 사항
- 3. 건축행정, 건축허가·착공·준공검사, 건축신고, 건축업자 지도·감독, 위법건물 관리 총괄, 건축물 영선, 건축물관리대장 관리, 도시경관 및 도시디자인, 무허가 건물 관리 및 위험건축물 철거에 관한 사항
- 4. 부동산중개업 관련 업무 추진, 지적공부 및 측량기준점 관리,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부동산거래 관리,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

제7조(중전의 제6조) 제1항 중 “관광정책과·경제진흥과·문화예술과·고용협력과·체육진흥과”를 “관광정책과·경제진흥과·문화예술과·고용협력

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생활경제 및 물가안정 관리, 동물보호”를 “동물보호, 스마트팜 업무”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상생기반”을 “상생기반, 생활경제 및 물가안정 관리”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제8조(중전의 제7조) 제2항제2호 중 “스마트 정책 추진, 정보기획”을 “정보화 추진”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 계약, 물품관리, 지출·회계, 결산에 관한 사항

제11조(중전의 제9조) 제1항 중 “교통행정과·주차관리과·보행행정과·도로개선과·물관리과·부동산정보과”를 “교통행정과·주차관리과·보행행정과·도로개선과·물관리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도로·지하도·하천·구거”를 “도로·지하도·구거”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제10조 앞의 “제3장 보건소”를 삭제한다.

제12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보건소

제13조 앞의 “제4장 동”을 삭제한다.

제15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동

제16조 앞의 “제5장 조직관리위원회”를 삭제한다.

제18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조직관리위원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사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당시 구본청·보건소의 국·담당관·과 간에 소관사무의 이동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개정내용에 따라 각각의 소관사무를 승계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관련 [별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주관국란 중 “재정관리국(부동산정보과)”을 “도시관리국(부동산정보과)”으로 하며, “도시관리국(부동산정보과)”을 관광경제국(경제진흥과) 아래로 위치시킨다.

나. 주관국란 중 “복지동행국(생활보장과)”을 “복지동행국(실뿌리복지과)”으로 한다.

다. 주관국란 중 “복지동행국(장애인동행과)”을 “복지동행국(장애인복지과)”으로 한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별표 1]의 재난분야 중 자연재난 6, 7의 “도시환경국”을 “환경녹지국”으로, 사회재난 중 2, 3, 7, 11의 “도시환경국”을 “환경녹지국”으로 한다.

나. [별표 2]의 협업기능반 중 ‘1) 긴급생활안정지원반의 실무부서(지원부서)’

의 “복지정책과(장애인사회보장과, 어르신동행과, 가족행복지원과)”를 “복지정책과(실뿌리복지과, 어르신동행과, 장애인복지과, 가족정책과)로 한다.

다. [별표 4]의 협업기능반 중 ‘가. 긴급생활안정지원반’의 “복지정책과(지원부서: 장애인사회보장과, 어르신동행과, 가족행복지원과)”를 “복지정책과(지원부서: 실뿌리복지과, 어르신동행과, 장애인복지과, 가족정책과)”로 한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장애인사회보장과장·가족행복지원과장”을 “장애인복지과장·가족정책과장”으로 하고, 제10조제3항 중 “안전총괄팀장”을 “안전기획팀장”으로 한다.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제2호 “디지털재정과장”을 “예산정책과장”으로 하고, 제3호 “주민생활복지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5. 「서울특별시 마포구 미래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복지동행국장”을 “교육체육국장”으로 하고, “교육정책과장”을 “소관 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6. 「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교육체육국장”으로 하고, 제5조제8항 중 “교육정책과장”을 “평생학습과장”으로 한다.

7. 「서울특별시 마포구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행정지원국장"을 "교육체육국장"으로 하고, "아동보육과장"을 "가족정책과장"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교육정책과장"을 "교육청소년과장"으로 한다.

8.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교육체육국장"으로 하고, 제10조제3항 중 "교육정책과장"을 "교육청소년과장"으로 한다.

9.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육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교육체육국장"으로 한다.

제4조 중 "교육정책과장"을 "교육청소년과장"으로 하고, "교육정책과"를 "교육청소년과"로 한다.

10. 「서울특별시 마포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교육체육국장"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 가족행복지원과장, 교육정책과장"을 "교육체육국장, 가족정책과장, 교육청소년과장"으로 한다.

11.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교육체육국장"으로 하고, "도시환경국장

”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

12.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장애인사회보장과장”을 ”실뿌리복지과장”으로 한다.

13.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장애인사회보장과장”을 ”실뿌리복지과장”으로 한다.

14.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료급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장애인사회보장과장”을 ”실뿌리복지과장”으로 한다.

15.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어르신동행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16.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가족행복지원과장”을 ”교육청소년과장”으로 한다.

17.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가족행복지원과장”을 ”가족정책과장”으로 한다.

18. 「서울특별시 마포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가족행복지원과장”을 ”가족정책과장”으로 한다.

19.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여성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가족행복지원과장"을 "가족정책과장"으로 한다.

20.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교육정책과장"을 "교육청소년과장"으로, "아동보육과장"을 "가족정책과장"으로 한다.

21. 「서울특별시 마포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경제진흥과장"을 "고용협력과장"으로 한다.

22.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도시환경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

23.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도시환경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

24.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도시환경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

25.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 중 "도시환경국장"을 "환경녹지국장"으로 하고, 제3조의2제

4항제1호 중 “교육정책과장”을 “교육청소년과장”으로 한다.

26.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도시환경국장”을 “환경녹지국장”으로 한다.

27.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도시환경국장”을 “환경녹지국장”으로 한다.

28.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3항 중 “도시환경국장”을 “환경녹지국장”으로 한다.

29.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도시환경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

30.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도시환경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

31.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도시환경국장”을 “환경녹지국장”으로 한다.

32.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도시환경국장”을 “환경녹지국장”으로 한다.

33.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가게 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2호 중 "디지털재정과장"을 "예산정책과장"으로, "생활보장과장"을 "실뿌리복지과장"으로 한다.

34.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중 "디지털재정과장"을 "예산정책과장"으로 한다.

35. 「서울특별시 마포구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가족행복지원과과장, 교육정책과장"을 "보육정책과장, 교육청소년과장"으로 한다.

36. 「서울특별시 마포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도시환경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국 및 담당관의 설치) ①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지원국, <u>복지동행국</u>, 관광경제국, 재정관리국, <u>도시환경국</u>, 교통건설국을 둔다.</p> <p>② 부구청장 소속으로 새마포담당관과 감사담당관을 두고, 새마포담당관은 구정 <u>기획·조정·심사분석·의회협력·공약 사업 관리·구민소통·법제심사</u> 및 송무 등을, 감사담당관은 <u>감사·조사·민원관리·심사·환경순찰</u>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p> <p>제4조(행정지원국) ① 행정지원국에 <u>행정지원과·자치행정과·홍보미디어과·구민안전과·교육정책과·민원여권과</u>를 둔다.</p> <p>② 행정지원국장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3. (생략)</p> <p>4. 안전정책 총괄·조정, 재난대응 및 복구 지원, <u>민방위, 전시운영계획</u>, 사회복지무요원 관리, 영상정보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p>	<p>제3조(국 및 담당관의 설치) ① ---- ----- ---- <u>복지동행국, 교육체육국</u>----- ----- <u>환경녹지국, 도시관리국</u>-----.</p> <p>② ----- ----- ----- <u>기획·조정·평가, 의회협력, 공약 사업 관리, 구민소통, 법제심사</u> ----- ----- -----.</p> <p>제4조(행정지원국) ① ----- - <u>행정지원과·자치행정과·홍보미디어과·구민안전과·민원여권과</u>-----.</p> <p>②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 <u>중대재해 예방, 민방위·전시운영계획</u>----- -----</p>

5. (생략)

6. 교육사업 추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마포구 미래교육지구 운영, 평생교육, 도서관 설립 및 운영 감독, 청소년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복지동행국) ① 복지동행국에 복지정책과·장애인사회보장과·어르신동행과·가족행복지원과·아동보육과를 둔다.

② 복지동행국장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지시책 추진, 지역사회보장 계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재해구호, 사회복지시설·법인 관리, 지역보호체계, 지역복지육구조사, 지역자원 관리, 복지서비스 연계, 통합사례관리, 보훈시책, 보훈대상자·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2. 기초생활보장, 복지대상자 조사 및 관리, 차상위계층 지원, 의료급여, 자활지원, 장애인복지시책 추진 및 장애인 복지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3. 노인복지 시책 추진 및 노인복지 시설 관리, 주거복지에 관한

5. (현행과 같음)

<삭제>

제5조(복지동행국) ① -----

- 복지정책과·실뿌리복지과·어르신동행과·장애인복지과·가족정책과-----.

② -----.

1. -----

----- 관리-----

----- 지원, 주거복지-----

2. 실뿌리복지 시책 추진, 고독사 예방 및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기초생활보장사업, 복지대상자 조사·관리 및 보장 결정, 의료급여 및 자활 지원, 차상위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3. 노인복지시책 추진, 노인복지 시설 관리, 노인 소득·일자리·돌

사항

4. 양성평등정책, 다문화가족·1인가구 지원,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

5. 아동복지·영유아보육 시책 추진 및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신 설>

제6조(관광경제국) ① 관광경제국에 관광정책과·경제진흥과·문

봄에 관한 사항

4. 장애인복지 시책 추진, 장애인 복지시설 관리, 장애인 소득·일자리·돌봄, 장애인 편의 및 자립에 관한 사항

5. 가족복지·양성평등·아동복지 시책 추진, 아동복지시설 관리, 아동보호, 다문화가족·1인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교육체육국) ① 교육체육국에 교육청소년과·평생학습과·보육정책과·체육진흥과를 둔다.

② 교육체육국장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사업 추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마포구 미래교육지구 운영, 교육시설 관리,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 도서관 설립 및 운영 감독, 독서진흥 및 도서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3. 영유아보육 시책 추진 및 보육 시설 설치·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4. 생활체육 진흥, 생활체육시설 설치·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7조(관광경제국) ① -----
- 관광정책과·경제진흥과·문

화예술과 · 고용협력과 · 체육진흥과를 둔다.

② 관광경제국장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지역경제 활성화, 전통시장 · 상업가 · 소상공인 지원, 생활경제 및 물가안정 관리, 동물보호에 관한 사항
3. (생략)
4. 고용정책, 고용사업, 청년지원, 사회적경제 상생기반에 관한 사항
5. 생활체육 진흥, 생활체육시설 설치·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7조(재정관리국) ① (생략)

② 재정관리국장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스마트 정책 추진, 정보기획, 전산운영, 정보통신,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3. 국·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 공사·용역의 설계 원가계산, 계약, 복식부기 회계, 지출, 세입·세출 총괄, 결산, 직원봉급 및 제 수당에 관한 사항

화예술과 · 고용협력과-----
-----.

② -----
-----.

1. (현행과 같음)
2. -----
----- 동물보호, 스마트팜 업무-----

3. (현행과 같음)
4. -----
----- 상생기반, 생활경제 및 물가안정 관리-----
<삭 제>

제8조(재정관리국)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정보화 추진-----

3.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 계약, 물품관리, 지출·회계, 결산에 관한 사항

4. (생략)

<신설>

<신설>

4. (현행과 같음)

제9조(환경녹지국) ① 환경녹지국

에 깨끗한마포과·자원순환과·
맑은환경과·공원녹지과를 둔다.

② 환경녹지국장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쓰레기 종량제, 생활폐기물, 환
경공무원 복무 관리, 생활폐기
물수집운반업자 지도·감독, 청
소차량 및 장비 관리, 공중화장
실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2. 자원활용정책 수립, 자원재활
용,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에 관
한 사항

3. 환경보전, 대기오염·수질오염·
토양오염 방지, 환경개선부담
금, 환경공해 방지, 에너지 관리
에 관한 사항

4. 공원·녹지 관리 총괄, 산림 보
호, 조수 보호, 도시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 공원녹지대 조성
및 유지·관리, 개발제한구역 관
리 총괄에 관한 사항

제10조(도시관리국) ① 도시관리국

에 주택상생과·도시계획과·건
축지원과·부동산정보과를 둔다.

② 도시관리국장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행정, 주택통계, 주택재개발 사업, 재건축 및 지역조합주택, 주거환경개선 사업,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공동주택관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 도시관리 계획, 도시개발, 도심재개발, 지구단위 사업, 촉진지구 사업에 관한 사항
3. 건축행정, 건축허가·착공·준공 검사, 건축신고, 건축업자 지도·감독, 위법건물 관리 총괄, 건축물 영선, 건축물관리대장 관리, 도시경관 및 도시디자인, 무허가 건물 관리 및 위험건축물 철거에 관한 사항
4. 부동산중개업 관련 업무 추진, 지적공부 및 측량기준점 관리,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부동산거래 관리,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

<삭 제>

제8조(도시환경국) ① 도시환경국에 주택상생과·깨끗한마포과·자원순환과·도시계획과·건축지원과·맑은환경과·공원녹지과를 둔다.

② 도시환경국장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행정, 주택통계, 주택재개발 사업, 재건축 및 지역조합주택, 주거환경개선 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동주택관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 쓰레기 종량제, 생활폐기물, 환경미화원 복무관리,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자 지도감독, 청소차량 및 장비 관리,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원활용정책 수립, 자원재활용,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에 관한 사항
4. 도시관리 계획, 도시개발, 도심재개발, 지구단위 사업, 촉진지구 사업에 관한 사항
5. 건축행정, 건축허가·착공·준공검사, 건축신고, 건축업자 지도감독, 위법건물 관리 총괄, 건축물 영선, 건축물관리대장 관리, 도시경관 및 도시디자인, 무허가 건물 관리 및 위험건축물 철거에 관한 사항
6. 환경보전, 대기오염·수질오염·토양오염 방지, 환경개선부담금, 환경공해 방지, 에너지 관리에 관한 사항

7. 공원·녹지관리 총괄, 산림보호, 조수보호, 도시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 공원녹지대 조성 및 유지관리, 개발제한구역 관리 총괄에 관한 사항

제9조(교통건설국) ① 교통건설국에 교통행정과·주차관리과·보행행정과·도로개선과·물관리과·부동산정보과를 둔다.

② 교통건설국장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2. (생략)
- 3. 도로·지하도·하천·구거 등 공용지의 사용허가 및 관리, 도로의 사용·수용·보상, 전문건설업, 가로정비, 옥외 광고물 관리에 관한 사항

4. 5. (생략)

6. 지적업무 총괄, 지적공부 관리,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관리, 지가조사, 부동산거래 관리, 부동산중개업,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

제3장 보건소

<신설>

제10조 ~ 제12조 (생략)

제4장 동

제11조(교통건설국) ① -----

- 교통행정과·주차관리과·보행행정과·도로개선과·물관리과-----.

② -----.

1. 2. (현행과 같음)

3. 도로·지하도·구거 -----

4. 5.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제3장 보건소

제12조 ~ 제14조 (현행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와 같음)

<삭제>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u>제13조</u> ~ <u>제15조</u> (생 략)</p> <p style="text-align: center;"><u>제5장 조직관리위원회</u></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u>제16조</u> (생 략)</p>	<p style="text-align: center;"><u>제4장 동</u></p> <p><u>제15조</u> ~ <u>제17조</u> (현행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와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u><삭 제></u></p> <p style="text-align: center;"><u>제5장 조직관리위원회</u></p> <p><u>제18조</u> (현행 제16조와 같음)</p>
---	--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3. 미첨부 사유

-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이상은
연 락 처	02-3153-8213